

---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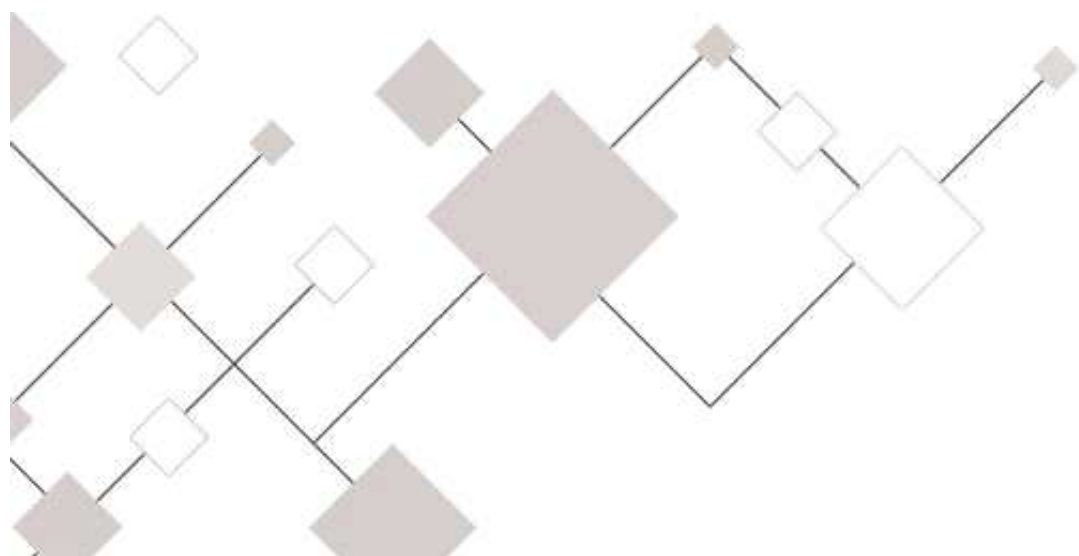
---

일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공동주최 ■ 우원식 의원, 신창현 의원, 윤소하 의원





---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

일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공동주최 ■ 우원식 의원, 신창현 의원, 윤소하 의원



# 프로그램 및 순서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3
사 회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 제	1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13
토 론	31
1.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33
2.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의 문제점	
최상준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45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53
4.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57
5.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69
부 록	71
[부록1]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	73
[부록2]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9. 7.	75





인 사 말







## 인사말



우 원 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 국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직후 산업부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 합병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보호 필요성이 필요한 개정이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술의 보호, 육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여야 이견 없이 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관련한 여러 안건을 병합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생략된 채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와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두 사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개정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진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소송장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주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산재입증자료가 국가핵심기술로 막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만 더 걱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입니다.

피해자만 5000여명이 넘는 가슴기살균제 사건이나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구미 불산 유출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입증책임 부여와 폭넓은 알권리 보장은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NO DATA, NO MARKET'은 기업 활동의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로 묶여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공개가 거부된다면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기업의 이익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은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칫 기업의 고발과 소송이 남발되고, 기술유출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자 외에 공익적 목적의 시민들을 억울한 사법적 처벌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의 기반 위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잘 청취해 필요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신창현, 윤소하 의원님과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애써주신 반올림과 발제를 맡아주신 임자운 변호사님을 포함한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사말



신 창 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

오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아주신 백도명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임자운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님,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님,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님, 이종철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기만 하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 창 현

## 인사말



윤 소 하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공동주최해주신 우원식 의원님과 신창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통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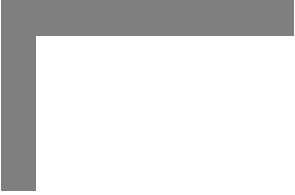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고, 제14조8(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은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요인이나 작업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과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에서 반올림과 삼성이 진행한 삼성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보건진단보고서>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이 모아지길 바라며, 저와 정의당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임자운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에 나서주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최상준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님,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님, 이종철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님께서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발 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문제점

임 자 운<sup>1)</sup>

### 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있기까지(관련 사건들)

- ▶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정보공개 소송
  - 2014. 10. 고용노동부(천안), <작업환경 보고서><sup>2)</sup> 전부 비공개 결정
  - 2015. 5. 고용노동부(경기),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sup>3)</sup> 전부 비공개 결정
  - 2015. 7. 반올림,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정보공개 소송 제기
  - 2016. 1. 김OO(직업병피해 유족),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소송 제기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삼성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함께 위 보고서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들의 공개에 반대했고, 고용노동부는 삼성

1)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반올림 활동가. [lawsuri@gmail.com](mailto:lawsuri@gmail.com)

2) 삼성전자 온양공장(2007-2014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의미한다. 그 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이OO님의 유족이 고인의 작업환경을 알기 위해 그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삼성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3)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특별감독’ 명령을 내린 후, 그 결과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각되자, 삼성전자 화성, 기흥, 온양 공장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다. 반올림은 이들 명령의 결과물인 화성공장 <특별감독 보고서>와 화성 및 기흥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역시 삼성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의 주장을 수용하여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 고용노동부, 삼성,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주장

- 2016. 3. 고용노동부(천안),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공개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주장4)
- 2016. 10. 삼성전자,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국가기밀 보호법에 따라 판단”5)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전자 정재륜 부사장. 삼성의 ‘영업비밀’ 판단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는 질의에,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 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을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련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40나노 이하 3D 적정 제품에 관련된 공정과 거기에 관련된 화학약품 모두가 국가기밀 보호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고 답했다.

4) 2016. 3. 9.자 고용노동부 준비서면. 삼성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관련 조항에 의해 대상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인정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이 충족된다는 취지.  
5) 2016. 1. 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에 대해 산재소송 중인 법원은 물론 국정감사 중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계속 제출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신창현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판단한 근거를 묻자, 정재륜 부사장은 이렇게 답했다. 여기서 “국가기밀 보호법”은 ‘산업기술 보호법’을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들에 대한 공개 논란에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뜬금없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끌어왔다. 2007년부터 계속된 삼성 직업병 문제에서 이 법이 언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요컨대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그 공장에 관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과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정보공개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보호법, 인정요건, 판단절차 등이 모두 달랐다. 단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은 정부의 승인 하에 수출이 가능했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출원도 가능했다. 비공개가 핵심인 ‘영업비밀’과는 꽤를 달리하는 개념이다. 둘째, 공장 작업환경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들이 모두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자료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공공기관(고용노동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였고, 그 자료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단된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했다.<sup>6)</sup>

▶ **고등법원,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 2017. 3.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작업환경 보고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일부 공개 판결<sup>7)</sup>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대전지법은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측정공정 수’, ‘노출기준 초과공정 수’, ‘측정방법’ 등 일부만 공개하도록 했고(중앙행정위의 재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 2016구합100927 판결), 수원지법은 <특별감독 보고서>는 ‘감독만 이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안전보건 진단 보고

삼성 등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장은 일응 효과가 있는 듯 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 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본문에 따라 보고서들의 내용 중 일부만 공개하도록 했다. 반올림과 직업병피해가족들은 이 판결들에 즉시 항소했다.

- 2017. 10. 서울고법,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일부 공개 판결(거의 전부 공개)<sup>8)</sup>
- 2018. 2. 대전고법,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공개 판결(근로자이름 외 전부 공개)<sup>9)</sup>

하지만 2심에서 이 보고서들의 내용 대부분이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생산기술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점, 설령 일부 그러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주장·입증되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과 동항 7호 단서(가목)에 따라 보고서들의 내용 거의 전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 2018. 2.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취득하게 된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경고성 편지 발송

고용노동부가 이 판결을 수용하여 직업병 피해유족에게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자, 삼성전자는 그 유족에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sup>10)</sup>

---

서>는 ‘총평’만 공개하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판결 이유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서 다른 기업에 비해 영업비밀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구단32302 판결).

8)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넓게 인정할 필요 있다. 그러나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 (2017누41988 판결)

9)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같은 호 단서 가목소정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017누10874 판결)

10) 미디어오늘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합니다> 기고글 참조

▶ 삼성,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말아야”

- 2018. 3. 고용노동부,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할 것”<sup>11)</sup>
- 2018. 3. 20. 고용노동부(경기),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sup>12)</sup> 공개결정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들의 취지를 참조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그 약속대로 또 다른 직업병 피해가족이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sup>13)</sup>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곧 공개 결정을 내렸다.

- 2018. 3. 26. 삼성, 산자부에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 2018. 4. 2. 삼성,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2018. 4. 23. 산자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위 공개 결정에 앞서 “이 사건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하자,<sup>14)</sup> 삼성전자는 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자부는 삼성의 신청이 있는지 한 달여 만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과 산자부의 그 인용 결정에도 크게 세 가지 문제

11) 2018. 3.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2) 삼성 반도체 기흥·화성공장 2010-2014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

13) 앞서 대전고법 판결에 의해 공개된 <작업환경 보고서>는 삼성반도체 ‘온양’ 공장에 대한 보고서였고, 2018. 3. 노동부가 공개 결정한 보고서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 대한 보고서였다.

14)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에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8. 3. 고용노동부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가 있었다. 첫째, 삼성 스스로도 분명하게 밝혔듯<sup>15)</sup>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을 받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판정 절차를 이용한 것이었다. 두 제도는 보호법익, 요건, 절차 등이 모두 다르다. 목적부터가 위법했다. 둘째, 아래 그림에서 보듯,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판정 제도는 특정 ‘기술’에 대한 것인데, 삼성은 특정 ‘문서’를 대상으로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특정 기술 내용이 특정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산업기술보호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산자부가 이러한 방식의 신청을 인용한 선례도 없었다. 즉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

<산자부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결과(2018. 4.)>

## II.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주요 내용

### 1 신청 근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 신청

### 2 신청 기술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셋째, 최근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소송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삼성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기 위해 산자부에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자부의 판정 이유를 보면 그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 항목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고용노동부 보관 <작업환경 보고서>에는 ‘측정위치도’ 항목이 빠져 있었다. 즉 삼성

15) “이 사건 각 공개결정 과정에서 경기지청장 및 평택지청장이 이 사건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삼성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참가인은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여 산업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신청하였다”(2019. 4. 9.자 삼성전자 준비서면)

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고 있는 보고서와 다른 버전의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그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고, 아래에서 보듯 중앙행정심위는 그 판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했다.

<산자부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결과(2018. 4.)>

① 측정위치도

- (내용) 공정명과 공정 lay-out
- (검토) 측정위치도의 공정명과 공정 lay-out을 통해 공정 및 설비의 배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
  - 공정 배치방법에 따라 웨이퍼의 이동이 최대 수십km 차이가 발생하여 웨이퍼 이동을 위한 자동반송설비의 수, 사업장의 면적에 큰 차이 발생

②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 (내용) 공정, 라인, 층, BAY 정보
- (검토) 부서/공정명 및 단위작업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BAY정보를 조합하여 공정 lay-out을 유추하여 측정위치도와 유사한 정보 획득 가능
  - 이를 통해 해외 후발업체 등은 공정 및 설비의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에 활용 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2018. 7.)>

2. 작업환경측정개요	
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 사건 각 정보에 해당 내용은 없음</u></li> </ul>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서 또는 공정'과 '단위작업장소'에는 위 '나' 중 '측정대상 공정'에 기재된 공정 및 설비명과 대응소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li> </ul>

▶ 일부 국회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산자부가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했다고 하여 바로 그 보고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 설명했듯, 산업기술보호

법상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두 제도를 연결하는 고리가 없었다. 그런데 산자부의 위 판정이 있는 직후부터 국회에서는 그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 2018. 5. 16.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제9조의2 신설 법안 발의
- 2018. 7. 10. 광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제10조의2 신설 법안 발의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절차에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비공개’ 조항(제9조의2)<sup>16)</sup><sup>17)</sup>은 그 전까지 삼성이 국정감사와 행정심판에서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광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결로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제10조의2)<sup>18)</sup> 개정법 제14조 8호에 반영)은 법원 판결로 <작업환경 보고서>를 취득하게 된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삼성이 보낸 편지의 내용<sup>19)</sup>과 동일하다. 광대훈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을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sup>20)</sup>.

- 2018. 7. 27. 중앙행심위,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결정 취소
- 2018. 10. 10. 반올림, 중앙행심위 취소 재결에 대한 소송 제기(2020. 2. 14 선고예정)

이렇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사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삼성이 원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작업환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장 내 ‘취급물질’을 알게 하는 항

---

16)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다.

17) (제안이유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18) 제10조의2(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사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미디어오늘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합니다> 기고글 참조

20) (제안이유 중)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목과 ‘유해물질 노출 장소’를 알게 하는 항목 등을 모두 비공개하도록 하여, 사실상 그 보고서의 공개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위원회는 “각 부분의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올림과 직업병 피해가족들은 이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2020. 2. 14. 선고 예정).

- 2018. 11. 23.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제9조의2 신설 법안 발의
- 2018. 12. 14.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제14조 8호 및 제34조 10호 신설 법안 발의

한편 국회에서는 점점 더 발전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었다. 앞서 윤한홍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했지만, 윤영석 의원은 ‘모든 절차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sup>21)</sup> 윤영석 의원도 제안 이유에 삼성 관련 국가핵심기술 유출 논란이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sup>22)</sup>. 또한 앞서 곽대훈 의원은 ‘판결로 취득한 국가핵심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장석춘 의원은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을 금지시켰고<sup>23)</sup><sup>24)</sup>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자도 확대했다.<sup>25)</sup>

## ▶ 국회 본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가결

21)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2) (제안이유 중)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23)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4) (제안이유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5)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 2019. 7. 12.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기법 개정안 대안 발의
- 2019. 8. 2. 국회 본회의. 이종구 의원 대안 가결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2019년 7월,<sup>26)</sup> 국회 산자위 이종구 위원장은 위 4개 법률안을 포함한 총 10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하는 대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른 175개의 법안과 함께 이종구 의원이 대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210명 재석, 206명 찬성, 4명 기권).

- 2019. 8. 13. 산자부 보도자료.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9조의2, 제14조8호, 제34조10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2.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 비공개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2019. 7. 1. 연합뉴스)

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이유불문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는 물론 산재심사 및 소송 절차에도 적용될 것이다. 법은 ‘공공기관’을 수범자로 정하였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이 조항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일까.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	해당 국가핵심기술	생산품목
기흥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파운드리, 비메모리 웨이퍼 (비메모리 : DDI, PMC, AP 등)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 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화성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 및 낸드플래시 웨이퍼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평택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 및 낸드플래시 웨이퍼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온양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고성능 메모리 및 AP 등 고부가 비메모리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이를 이유로 삼성전자는 위 공장에 대해 작성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주장해 왔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문서다. 또한 삼성전자는 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권한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다.

산자부는 이미 삼성의 요청에 따라 삼성 기흥·화성·온양·탕정·평택·아산·천안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정보라고 판정했다.

종래 이러한 보고서들의 공개 여부는 모두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었다. 주요 기준은 동법 제9조 1항 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동법 제9조 1항 7호 가목(“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성’만 인정되면 무조건 비공개다. 설령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정보라서 공개된다 한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을지라도, 심지어 그 정보를 은폐함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물론 단서 조항이 있긴 하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개될 수 있다.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단서는 없다. 또한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산자부 장관의 동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쓰이지 않을 단서로 보인다.

#### 나. 적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 금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8. 20. 개정)

1. ~ 7. 호 생략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종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정하여 처벌했다.<sup>27)</sup> 그

러나 이번에 신설된 제8호는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정보의 취득 경로에 제한이 있긴 하다. 그런데 “산업기술 관련 소송”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에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절차, 산재심사 및 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절차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그 이유로 밝혀졌던 내용이기도 하다.<sup>28)</sup>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절차에서는 ‘청구 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산재소송이 취득 경로에 포함된다면 해당 소송을 벗어난 모든 행동이 “목적 외 다른 용도”가 될 수 있다. 기업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27)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8) (2018. 11. 23. 윤영석 의원 법안 제안이유)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제8호의 “공개”에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제14조 1호).

제8호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6조 4항)<sup>29)</sup>. 해당 사업장은 **제8호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수사기관 등은 그러한 요구를 받으면 조사·조치를 해야 한다(제15조).<sup>30)</sup> 해당 사업장은 제8호 행위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제22조의2).<sup>31)</sup>

즉 이 조항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모든 공익적 활동을 민·형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정보공개 청구 절차나 산재 소송 절차를 통해 그 사업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자가 그 유해성을 폭로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 사업주는 일단 그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산자부가 2019. 12. 19.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제8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통상의 산업기술관련 소송을 말한다고 했다.<sup>32)</sup> 이로써 제8호

---

29)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32)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을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

전단은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통상의 산업기술 관련 소송을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되었다. 이상한 동어반복이다. 비판을 의식한 소극적인 입법 행태로 보인다. 시행령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

## 다.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의 해석범위가 역시 모호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위 “비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앞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취득한 삼성 반도체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부당한 목적”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누설(외부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조 6항).<sup>33)</sup> 결국 위 제14조 8호(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한편 산자부가 2019. 12. 19.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제10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역시 동어반복 수준으로만 정해놓았다.<sup>34)</sup>

---

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통상의 산업기술 관련 소송을 말한다.

33)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㉞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36조의3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

### 3. 마치며

2007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직업병 투쟁의 역사는 곧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 투쟁의 역사였다. 그 오랜 투쟁의 성과로 우리는 <2009년 삼성 기흥공장 위험성평가 보고서><sup>35)</sup>, <2007년-2014년 삼성 온양공장 작업환경 보고서><sup>36)</sup>, <2010년 삼성 기흥공장 작업환경 보고서><sup>37)</sup>, <2013년 삼성 화성공장 특별감독 보고서><sup>38)</sup>, <2013년 삼성 기흥·화성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sup>39)</sup> 등을 볼 수 있었다. 모두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겨우 볼 수 있게된 자료들이다.

이 보고서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모두 위 보고서들에 기재된 내용들이다)

- 2009년, 삼성 기흥공장 포토 공정에서 취급하는 50여종의 '감광제' 중 6개를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6개 제품 모두에서 '벤젠'(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검출
- 2009년, 삼성 기흥공장 5라인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성분은 총 83종인데 삼성은 그 중 24종에 대해서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음
-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삼성 기흥공장 5라인에서 총 46회의 가스검지기 경보가 울렸음. 유독가스가 고농도로 상당 시간 누출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장 근로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
- 2010년, 삼성 기흥공장 포토 공정에서는 2009년에 '벤젠'이 검출된 감광제가 계속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업무
2. 통상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35) 2009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의 결과 보고서. 고 황유미 씨 등 백혈병 피해자 5인의 산재 소송에서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에 의해 일부만 공개됨.

36) 2018년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37) 2018년 대전고법 판결 후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지침 개정에 따라 산재소송에서 제출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38) 2013년 1월에 발생한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결과.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됨.

39) 2013년 화성공장 특별감독에 이은 후속조치로 내려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결과.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됨.



쓰이고 있었고, 여전히 그 공정에서 '벤젠'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은 실시되지 않았음

- 2010-2012년, 삼성 화성공장에서는 16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총 57종의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있었음
- 2013년, 삼성 화성공장에서는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
- 2013년, 삼성 기흥공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관찰"됨(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 총평)
- 2013년, 삼성 기흥공장에는 가스감지기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유독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없는 곳이 있었고, 유독가스 실외 배출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13년, 삼성 기흥공장에서는 취급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암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공정에서도 관련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음
- 2013년, 삼성 기흥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진단은 회사가 상당수의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진단 수행에 한계가 있었음

그런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는 2020년 2월 20일 부터는 어떨까.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위 보고서들은 모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들이다. 위 보고서들 중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나왔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은폐되고 말 것이다.

그뿐만인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건강을 위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발표하는 활동가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만 있어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회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그런 법이다.

2017년 11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노동자 알권리법"이라 불렀다. 현장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의 작업환경에 관한 각종 자료들,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등에 자

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료들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은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사회가 초안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 되자, 단 하루만에 “강력반대”, “절대반대”를 외치는 1,073개의 악플(반대 댓글)이 달렸다. 의심의 여지없이 조작된 여론이었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극적으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에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제도 정도만 일부 반영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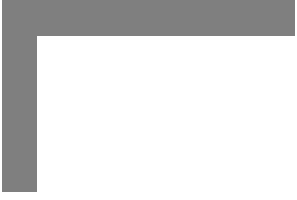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과정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될 때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역시 하루만에 “당연찬성”, “적극찬성”을 외치는 2-300개의 선플(찬성 댓글)이 달렸다. 이 법안들은 작년 7월,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져 발의되었고, 한달 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누군가의 치밀한 기획으로 완성된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논란을 계기로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 사실상 입법적으로 해결”,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이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진행된 입법적 조치다”.<sup>40)</sup>

이 법은 국회의원 206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명의 반대표도 없었다. 지금까지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공감해 왔던 의원들, 삼성의 작업환경은 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의원들도 모두 이 법에 찬성했다.

예상되는 원인은 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 상황에서 산자부의 보도자료처럼 ‘산업기술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 정도로만 알았을 것이다. 누가 어떤 의도록 기획했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조항들이 담겨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가결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대한 무책임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그게 최소한이다. (끝)

40) 2019. 9. 16.자 삼성디스플레이 준비서면, 2019. 10. 23.자 삼성전자 준비서면



五

五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위의 법조항들대로라면 산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제외된다. 산자부의 행정행위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 I.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은 위헌법률심사 대상이다.

알 권리가 별도의 입법 없이도 다른 기본권처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타 법령에 의해 비공개지정이 되어 기본권유보가 발생하더라도 그 유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범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알 권리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거나 입법을 통해서만 보장되는 어떤 권리라면 정보공개청구법(또는 법령)이 알 권리의 보호범위를 한정지을 것이다. 즉 정보공개청구법이 ‘타 법령이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제9조 제1조제1항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 된다.

우리 헌법은 알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 초기 결정인 임야대장 및 토지조사부의 열람불복사건(헌재 1989.9.4. 88헌마22)에서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또는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여 소위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위의 서술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자유권적 요소’로 즉 소극적으로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서술로서 ‘알 권리’를 ‘청구권적 요소’를 포함하는 이중적인 내용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알 권리”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다시 견해가 갈릴 수 있지만, 본건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비록 공문서 공개의 원칙보다는 공문서의 관리·통제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하지만 “정부공문서 규정” 제36조 제2항이 미흡하나마 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곧바로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형태로 입법자의 결단 또는 최소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에 의한 결단이 필요했는지를 애매하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알권리의 청구권으로서의 본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통해서만 구체적 권리로 된다’는 견해, ‘정보공개청구권으로써의 알 권리를 실정법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결여된 경우에도 사법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sup>41)</sup>

김창조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판시에 주목하며 알 권리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입법 없이도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

41) 최인호,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년 6월, 한국공법학회, 547-548쪽; 정하명,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2014년 2월, 한국공법학회, 35쪽; 김창조 보고서, 24쪽

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 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사회가 고도의 정보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즉 알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권리로써 파악하고 있다.<sup>42)</sup>

최인호 역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해 온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 . . 알 권리의 직접적 효력을 일관되게 부인해 온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자유법이 제정된 이유는 알 권리를 구체화하기 보다는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창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입법이 없더라도 알권리가 보장되어온 체제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sup>43)</sup>

이에 따라 김창조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며 입법적인 개선책까지 제시한다.

비밀과 관련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들(각주19: 헌재 1997.1.16.,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병합); 대판 1996.10.11., 94누7171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을 참조하고,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원판결들이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가 비공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어져 소위 <실질비>에 해당하여야 한다. (각주21: 현행 정보공개법은 형식비를 전제로 비공개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가 실질비를 전제로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준수여

42) 김창조 보고서, 24쪽

43) 최인호, 547-548



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법개정시에는 실질비의 기준을 명문으로 비공개사유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sup>44)</sup>

실제로 토지조사부 결정으로 돌아가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알 권리”도 헌법유보(제21조 제4항)와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 권리”는 아무에게도 달리 보호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밀줄친 부분의 서술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없이도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보장하였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입법자의 비밀지정이 - 그것이 법률로 되든 명령으로 되든 법령이 비공개대상을 특정하는 형식으로 되든 법령이 비공개대상의 기준과 유형 만을 추상적으로 정하는 형식으로 되든 - 헌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인가? National Critical Technology라는 개념은 1970년-80년대 미국 연방정부가 독일과 일본에 산업적 경쟁력을 추월당한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산업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도 담지하고 있다고 보아 각 정부부서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유지할 산업을 선별하도록 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sup>45)</sup> 우리나라

44)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5권, 115-141 (2006), 121쪽

45) **Identifying Critical Technologie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Federal Effort**, *Journal of Forecasting J. Forecast.* 22, 113-128 (2003)

의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핵심기술로의 선정은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 또는 외국에의 라이선스 등을 통해 기술이 외국에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sup>46)</sup> 국민에 대하여 일종의 비밀정보를 창설한다거나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국가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일반<sup>47)</sup>에 대한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려는 조항도 산업기술보호법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체가 스스로 정보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적으로 정보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하여 느슨한 편이다.<sup>48)</sup> 이를테면 ‘절취,

46)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 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48)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기망,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유출행위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려는 법률이 아니었다.

물론 연구자들이나 관련 산자부 공무원들의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하려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을 스스로 잘 관리해 산업적 경쟁력을 잃지 말라는 취지였다. 이것은 마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정보공개법 . . . 소정의 비공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볼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게 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될 것”<sup>49)</sup>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번에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 즉 이들 산업기술유출금지 조항들이 산업기술 전체를 일종의 ‘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청구법 상의 공개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착각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면제될 수는 있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다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sup>50)</sup> 그 외 정보공개청구로부터의 면제는 정보공개청구법을 따라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내용이 이렇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 및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과도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공장의 위치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II. 법률이 비공개 범위를 공무원에 위임할 수 있을까?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하략>
- 4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1. 9. 6, 2000누15073 (대법원 선고 2004. 3. 18, 2001두8254에서 확정) (보안관찰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 50)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백보를 양보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헌법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누가 정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2의 또다른 특성은 다른 법률과 달리 스스로 비공개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산자부장관이 비공개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가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로부터의 면제가 인정되었다.<sup>51)</sup>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정보원법과 달리 행정기관 스스로 비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스스로 비공개대상을 명시하거나 법률에 위임한 명령이 비공개대상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이나 명령이 다시 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의 헌법적 문제는 명약관화하다.<sup>52)</sup> 행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로 지정하는 것들도 모두 정보공개의무로부터 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보공개청구법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정당한 기밀성이 있어서 비밀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기관장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지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결국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라는 대의명분은 정보공개청구법의 의의는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은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1항1호에 대응되는 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특정[될 것]'을 요구함은 물론 (A) 그 법이 비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을 허용하지 않거나 (B) 비공개되는 정보의 기준과 종류를 특정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3)</sup> 특히 2009년 이후에 시행된 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법 조항을 명

5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52) 박경신,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비공개지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제49호, 2015년

시할 경우에만 정보공개청구법 상 면제효과를 획득하도록 한정하고 있다.<sup>54)</sup> 즉 비공개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을 정도로 특정 정보를 직접적으로 비공개지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특정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산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정할 수 있어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회가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보공개청구법과 달리 법률이 아니라 법률이 위임한 명령<sup>55)</sup>도 면제효과를 갖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재단하는 법제의 위헌성에 더하여 산업기술보호법처럼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알 권리를 재단할 권한을 주는 것은 기본권법정주의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국방 외교 등의 정보는 법률이나 명령으로 일일이 비공개여부를 정하기 어렵지만 통제의 필요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법도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sup>56)</sup> 하지만 이 조항은 실제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처럼 행정기관의 장이 알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알 권리의 보호범위를 재단하는 사례와는 다르다.

### III. 알 권리의 범위가 공무원에게 유보된 사례: 보안업무규정

현 법체제상 행정기관의 장이 비공개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4조<sup>57)</sup>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비밀지정을 할 수 있다. 미국 정보공개청구

---

53)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are-- . . . (3) specifically exempted from disclosure by statute (other than section 552b of this title), provided that such statute (A) (i)requires that the matters be withheld from the public in such a manner as to leave no discretion on the issue, or (ii) establishes particular criteria for withholding or refers to particular types of matters to be withheld; and (B) . . .

54) (B) if enacted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e OPEN FOIA Act of 2009, specifically cites to this paragraph.

55) 법률의 위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1. 9. 6, 2000누15073 (대법원 선고 2004. 3. 18, 2001두8254에서 확정) (보안관찰 통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2004. 9. 23, 2003두1370. 같은 취지의 판결: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대법원 판결 2006두11910

5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7)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은 위에서 실시했듯이 ‘타법령 비공개 지정’에 의한 면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국방 외교와 관련되어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비공개지정이 가능하고<sup>58)</sup> 비공개지정 자체는 각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진다.<sup>59)</sup>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은 다음의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국방 외교와 같이 긴밀한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재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국회가 재단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는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이다. 물론 보안업무규정 하의 비밀지정은 법원에 의해 해당 조항이 내재하고 있는 요건 즉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실제적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sup>60)</sup> 산업기술보호법 하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도 법원이 후속적으로 실제적 심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는 고도의 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판단을 넘어서야만 국민의 알 권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강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면제조항으로 해당 법익이 충분히 보호됨을 고려하면 침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한다. 둘째, 미국의 비밀지정에 대한 행정명령 내에는 비밀지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어<sup>61)</sup> 국민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산업기술

1. I 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 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58)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b)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matters that are— (1)(A) specifically authorized under criter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be kept secret in the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or foreign policy and (B) are in fact properly classified pursuant to such Executive order;

59) Executive Order 13526 (President Barack Obama)

60)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 Executive Order 13526 (President Barack Obama) **Sec. 1.8. Classification Challenges.** (a) Authorized holders of information who, in good faith, believe that its classification status is improper are encouraged and expected to challenge the classification status of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gency procedure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b) In accordance with implementing directives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an agency head or senior agency official shall establish procedures under which authorized holders of information, including authorized holders outside the classifying agency, are encouraged and expected to challenge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that they believe is improperly classified or unclassified. These procedures shall ensure that: (1) individuals are not subject to retribution for bringing such actions; (2) an opportunity is provided for review by an impartial official or panel; and (3) individuals are advised of their right to appeal agency

보호법에는 산자부의 지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산업기술 보호법 제9조의2 2항에 따라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공개에 대한 것이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공개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sup>62)</sup> 이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지정권자인 산자부의 결정에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산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 외교 상의 비밀지정은 그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뤄지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비밀지정은 산업적 필요(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의 국가안보가 보안업무규정 상의 “국가안보”와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적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정권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자의적 행정권에 의해 재단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decisions to the Interagency Security Classification Appeals Panel (Panel) established by section 5.3 of this order. (c) Documents required to be submitted for prepublication review or other administrative process pursuant to an approved nondisclosure agreement are not covered by this section.

62)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의 문제점

최상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이사

### 1. 알 권리(Right-to-Know) 제도화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

*“보팔 재난 사고 피해자들은 35년 동안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The Bhopal disaster victims still waiting for justice 35 years.*<sup>63)</sup>

1984년 12월 2일 70만명의 보팔시 주민들이 깊이 잠든 밤 11시에 인도 보팔 시에 있는 농약 제조공장의 한 노동자는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탱크의 가스가 누출되고 있고, 탱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MIC 탱크의 가스 누출시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스크러버는 3주전에 작동이 멈춘 상태였고, 탱크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동설비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탱크와 연결되어 배출 가스를 태울 수 있는 굴뚝은 정비를 위해 연결관이 분리되어 3개월 전부터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안전설비가 모두 결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MIC 탱크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급 상승하며 12월 3일 새벽 1시에 MIC 탱크의 안전밸브가 터지면서 약 40톤의 MIC 가스가 보팔 시 대기로 분출되었다.

탱크 폭발로 분출된 MIC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로 인해 낮게 깔리면서 공장 인근 지역 주민 약 3,800명이 즉사하였고, 15만명에서 60만명 가량의 주민이 가슴 답답함, 기침, 눈 따가움, 폐 부종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후 15,000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63) 사진작가 Judah Passow

(<https://www.theguardian.com/cities/gallery/2019/dec/07/the-bhopal-disaster-victims-still-waiting-for-justice-35-years-on-in-pictures?page=with:img-9>)

하였다.

사고 당시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났으나, 의사들과 환자들은 어떤 독가스에 노출된 것인지 알지 못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어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컸다고 알려져 있다. 사고 후 인도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약 50만명의 주민이 MIC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세계 최악의 산업 재난이라고 불리는 보팔 참사(Bhopal disaster)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었던 카바릴(Carbaryl: 상품명-세빈, Sevin)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사(Union Carbide Corporation, UCC)의 인도 사업장이었다. 1970년대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UCC는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맞물려 1969년에 교통 여건이 좋았던 보팔 시내 중앙에 공장을 건립하였다. 카바릴 제품은 메틸아민과 포스젠을 반응시켜 만든 MIC와 1-나프톨이라는 화학물질을 반응시켜 만들어진다. 포스젠은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맹독성 살인가스로 알려져 있다. MIC는 직접 흡입시 호흡곤란과 폐기종을 발생시키고 눈을 실명시키고, 임산부의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이며 물과 반응시 강렬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수십만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 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15년간 사용되어 왔지만 주민들은 아무도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알지 못했다.

사고 이후 공장은 1986년 폐쇄되었고, 인도 대법원의 중재로 미국 UCC 측은 미화 4억7천만 달러를 인도 정부에게 지급하였고, 약 55만명의 주민들에게 각 가구당 2,200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보상금은 약 5년 정도의 치료비에 불과하였고,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도 보팔 공장의 사고 잔해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의 지하수와 토양은 오염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팔 참사는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유독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취급 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지역 주민들은 위험 정보를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보팔 참사 이후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1986년 ‘비상대응과 지역주민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을 공포하였고, 1988년에는 ‘독성화학물질 배출 보고:지역주민 알 권리법’(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Community Right-To-Know)이 공포되어 해당 업체는 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2.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Right-to-Know)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안전하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시장에 팔지 말라*

*No Data, No Market - EU REACH Slogans.*<sup>64)</sup>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 영업비밀(trade secre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of business)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영업비밀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면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2007년 시행된 유럽연합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하고 있다. ‘No Data, No Market’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EU 내에서 화학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없다는 예방 위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최 우선의 원칙으로 제시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 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해야 하고, 사용량이 많거나 유해성이 높은 특정물질(CMR, PBT, vPvB 등)<sup>65)</sup>은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유해 위험 정보의 공개가 먼저라는 화학물질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배경으로 2013년에 ‘K-REACH’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통한 건강보호를 위한 ‘유해물질법(Hazardous Products Act, HPA)과 사업주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유해물질정보심사법(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HMIRA)을 운영하고 있다. HPA는 법령의 총칭은 ‘작업장 사용, 취급, 저장 목적 유해물질의 판매 및 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An Act to prohibit the sale and importation of hazardous products that are intended for use, handling or storage in a work place)’이며,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64) [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reach/reach\\_en.htm](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reach/reach_en.htm)

65) CMR(Carcinogenic, Mutagenic, toxic to Reproduction),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ity of reproduction), vPvB(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Safety Data Sheet, MSDS)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HMIRA는 MSDS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는 관리제품 또는 그 구성물질 중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항목의 정보 공개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비밀로 정보 공개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획득해야만 한다. 즉,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제품의 유통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심사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부터 MSDS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 중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반도체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MSDS를 수집하여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중 39~43%의 제품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었고, 감광제(포토레지스트) 제품 중에서는 97~98%의 제품이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66)</sup>. 이와 같이 국내의 유해물질 소통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캐나다의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향후 MSDS 내 영업비밀로 공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개정된 상태이다.

EU REACH와 국내 화평법, 캐나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 심사제도와 이를 받아들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보다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알 권리 확보가 우선되는 가치임이 국내의 제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 3.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

**‘산기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 신설조항)**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66) Sunju Kim, Chungsik Yoon, Seunghon Ham, Jihoon Park, Ohun Kwon, Donguk Park, Sangjun Choi, Seungwon Kim, Kwonchul Ha & Won Kim (2018) Chemical use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24:3-4, 109-118, DOI: [10.1080/10773525.2018.1519957](https://doi.org/10.1080/10773525.2018.151995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산기법의 내용 중 신설조항인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은 앞서 기술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제도화의 과정과 화학물질의 안전보건 제도의 최근 패러다임과 완전히 대치되는 조항이다. 기업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영업비밀로서 정보 공개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보호될 가치가 있음을 기업이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기법의 신설조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정보공개를 원하는 자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산기법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 등)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되고 있으며, [부록2 별표]와 같이 12개 분야 68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제9조의 2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정하는가인데. 이미 삼성전자가 판정을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2018년 4월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정보라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부록2 별표]에 있는 각종 업종의 제조 기술 공정을 대상으로 조사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도 모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로 판정되어 정보공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는 비단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만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련 각종 사업장의 진단, 평가 정보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각종 안전보건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현재 국내의 취약한 안전보건 정보 소통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암(cancer), 생식독성과 같은 만성질환 피해자의 산재보상을 위해 직업 관련성 여부 판정을 위한 자료 접근권이 제한 될 수 있다.**

암, 생식독성 질환 등은 20-30년의 긴 기간 동안 장기간 누적 노출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퇴직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한 사업장의 과거 유해인자 노출 이력을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유해위험 물질 보호령(GefStoff)’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노출 종료 후 40년간 보존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된 기록의 발췌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의사, 관할 행정관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장 내 관계자,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퇴직 후 노동자들에 대한 근무 당시의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량적 노출평가 자료로서는 유일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경우 현재 사업주 보존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과거 자료를 요청해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질병 피해자가 자신의 노출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사업주는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기관에서 K2B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송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로 해석될 경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요청하더라도 공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둘째, 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180여개의 작업환경측정기관들에 위탁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사업장 내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노출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될수록 정확한 노출평가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과거 근무했던 퇴직자가 암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특히 사업장에서의 정보 제공이 제한될 경우 정확한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정보 제공이 소극적이거나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결과를 이용한 과거 노출수준 평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기법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될 경우 개별 사업주들도 국가핵심기술 분야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 작업환경측정이나 역학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위험 관련 정보들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구실로 합법적으로 은폐되어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보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 셋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안전보건 정보 분석을 통한 국가 정책 수립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국가가 필요한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보건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필요하다. 어떤 업종과 직업, 공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국가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국가노출감시체계라고 하며,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 수집 가능한 각 사업장의 조사자료들을 집계하여 자국의 노출감시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노출감시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1945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조사 자료들을 국가 통계로 수집 분석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자료를 비롯하여 특수건강진단 자료, 안전보건 진단 자료 등이 안전보건공단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산재예방 정책이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런데 개정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 규정(제9조의 2)이 시행될 경우 이를 근거로 국가노출감시체계 구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결과의 공개 활동 등 공익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4. 맺음말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제도는 보팔 참사, 가슴기 살균제 사건,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 사건 등.. 많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교훈의 산물이며, 기업의 경제활동 및 국가 경제 발전 등 그 어떠한 명분보다도 노동자/시민의 생명 존중과 건강 보호의 가치가 최 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국내 기업 보호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산기법의 본래 취지를 특정 기업의 불량한(?)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활용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것이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족쇄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끝).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입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악법임.

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

현재 정보공개법에서는 기업이 제출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1차적으로 주무부처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이미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공기관이 제 3자(기업)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또한 각 주무부처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개 여부의 판단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sup>67)</sup>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

6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의 동의를 구하고, 또다시 산자부 산하 위원회(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일단 무조건 비공개하고, 그 공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에 맡기는 구조인데, 이는 시민 측의 공개요청과 기업 측의 정보 비공개요청에 있어 공공기관이 공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노동자,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수집하는 것들이 대부분임.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곧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은 전혀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 기본권과 직결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허락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각 부처의 고유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며,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임.

게다가 특정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 일체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시의 공익과 비공개시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9조 1항 1호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억지 논리임<sup>68)</sup>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법적 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며, 정보공개를 통한 공익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음.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공에 공개하는' 법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

6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공개의무를 정한 법률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하지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제34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을 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각 5년, 3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3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과중한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음. 이러한 조항은 ‘공공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정보공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게다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산자부 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공개를 꺼려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일단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큼. 이는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보공개 중요한 목적이자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며, 기업을 비판하는 공익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듦.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정보나 공적자금내역 등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비밀로 만드는 것은 국회가 나서서 기업을 대중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음.

국회의 이러한 기업 감싸기식 입법활동과는 정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도체 생산 노동자의 지속적인 산재 발생을 비롯해 구미불산누출사고, 가슴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과 사고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REACH),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오르후스 국제조약과 세베소지침 등 이미 세계 각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흐름임. 기업의 상품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유해성분에 대한 알 권리는 단순히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기업의 무책임이 수많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한국사회는 몸소 경험한 바 있음. 기업은 노동자, 지역주민,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기업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하며,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러한 노력

은 방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악법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는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위한 노력을 저해할 뿐임.

3. 산업기술보호제도는 R&D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유출이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기술의 이동, 특허로 등록된 기술의 수출 등 국제관계에서 국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능해야 함. 노동, 안정,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영업 비밀과 알 권리의 비교·형량하에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지 국가핵심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개입할 이유가 없음. 산업기술보호제도가 더 이상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도깨비방망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산업발전을 구실로 시민들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을 통과시킨 책임을 국회가 져야 할 것임.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 |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안의 개요

- 법안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77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위원장 이종구, 위원장 대안 발의)
- 소관상임위 상정 : 2019년 7월 12일, 본회의 처리 : 2019년 8월 2일
- 대안의 제안이유

가.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합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및 제34조).

마.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안 제14조의4).

바.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사. ‘조치’를 ‘조사’로 변경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하도록 명확화 함(안 제15조).

**야.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함(안 제36조).**

○ 대안폐기된 주요 법률안 정리(총 10건 대안폐기됨)

발의안	법안 제안이유(원문 인용)	핵심조항 관련여부			
		9조의2	14조	34조	36조
윤한홍 의원안 2018.5.16 (201359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현재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광대훈 의원안 2018.7.10 (2014321)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의2 및 제36조제3항).		●		●
윤영석 의원안 2018.11.23 (2016767)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또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산업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

	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제9조의2 및 제36조제1항).				
장석춘 의원안 2018.12.14 (2013595)	<p>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가. 대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p> <p>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4조제8호 신설).</p> <p>다. 비밀유지의무 유형에 제공 행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함(안 제34조).</p>			●	●

\* 의원의 소속은 모두 자유한국당

○ 공포안의 핵심조항

구분	내용
9조의 2	<p><b>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b></p> <p>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b>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b>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8.20.]</p>
14조	<p><b>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b></p>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gt;</p> <p>(..중략..)</p> <p>8. <b>산업기술 관련 소송</b>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p>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4조	<p><b>제34조(비밀유지의무)</b></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5.1.28., 2019.8.20.&gt;</p> <p>(..중략..)</p> <p>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b>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p>
36조	<p><b>제36조(벌칙)</b></p> <p>(..중략..)</p> <p>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9.8.20.&gt; &lt;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8.20.&gt;</p> <p>(..중략..)</p> <p>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6.3.29.&gt; &lt;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9.8.20.&gt;</p> <p>(..중략..)</p> <p>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lt;개정 2019.8.20.&gt; &lt;제7항에서 이동 2019.8.20.&gt;</p>



□ 법안처리를 둘러싼 경과 정리

○ 연관 이슈별 타임라인

시기		국회 법안처리	삼성피해자 소송 진행	일본 무역갈등
2017년	3월		대전·수원지법, 작업환경 보고서 및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일부 공개 판결	
	10월		서울고법,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일부공개 판결	
2018년	2월		대전고법, 작업환경보고서 일부공개판결(온양) 삼성, 위 보고서 관련 경고 편지	
	3월	20일 26일	노동부,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결정(기흥,화성)	
	4월	2일 23일	삼성, 노동부의 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제기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인정 판정	
	5월	16일	윤한홍 의원안 발의	
	7월	10일 27일	곽대훈 의원안 발의 중앙행심위, 노동부 보고서 공개결정 취소	
	10월	10일 30일	반올림, 위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11월	23일	윤영석 의원안 발의	
	12월	14일	장석춘 의원안 발의	
2019년	7월	1일 4일 5일 12일 21일 31일	소위 의결(대안 마련) 대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대안 법사위 통과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발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발동  일본 참의원 선거
	8월	2일 7일 12일 20일 22일	대안 본회의 가결  공포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일본, 위 결정을 관보에 고시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  한국,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
2020년	2월		중앙행심위 소송 관련 선고 예정	

○ 타임라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상황

- 삼성피해자 소송에서 2018년 3월부터 ‘국가핵심기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
-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 판정 이후 국회에서 산기법 개정안이 집중 발의

(산기법은 소관 부처가 산업부이며,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부처)

- 법안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시점은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가장 첨예하던 시기

## □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검토

### ○ 상임위의 인적 구성(총 28인)

-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2명
- 당시 상임위원장 이종구(자유한국당),
- 당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소위원장 이연주(바른미래당) → 김삼화(바른미래당)
- \* 산자위에는 4개의 소위가 있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

### ○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

#### 1) 윤한홍 의원안

“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판결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외 없는 정보의 비공개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법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국가안보 위하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2) 광대훈 의원안

“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판결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광대훈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용·공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법 제14조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3) 윤영석 의원안

“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청구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 이는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다만, 예외 없는 정보의 비공개는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다른 법사례를 참조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한 요건을 설정하고, 공개여부 심의 시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협의 절차 신설,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입법취지와 알권리 간의 조화가 필요해 보임.”

#### 4) 장석춘 의원안

“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경우, 이는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즉,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

#### ○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소위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점검

- 1) 2018년 11월 20일 : 윤한홍 및 곽대훈 의원안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소위에서 심사
- 참석자 : 이연주(바른미래당, 소위원장), 권철승(민주당), 이훈(민주당), 최인호(민주당) 송대호(산업위 수석전문위원), 정승일(산업부 차관)
  -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고, 곽대훈 의원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 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사용·공개 금지를 규정한 법 제14조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법 제34조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산업부 차관 의견

“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동의를 하고, 다만 헌법상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기본권과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9페이지에 수정의견 드렸던 대로 예컨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에 제외 사유

등을 저희가 차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아울러 이런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도 공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넣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수석전문위원이 타당성을 주장했고, 산업부의 경우 ‘건강’에 대한 단서 조항을 제기

2) 2019년 7월 5일 : 산업기술보호법안 전체를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소위에서 심사

- 참석자 : 김삼화(바른미래당, 소위원장), 김성환(민주당), 이훈(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박맹우(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이철규(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송대호(산자위 수석전문위원), 정승일(산업부 차관) 및 이하 실국장

- 주요 논의 과정 요약

- 1) 9조2항에 있어 비공개 예외 단서에 대해 갑론을박
- 2) 단서에 대해 상임위에서는 당초 다음과 같이 정리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관련된 내용을 차용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각호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러니까 공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각호로 해서 열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3)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단서에 대해 부정적 입장 지속 표명하였고 두 의원의 입장이 결국 최종반영되어 의결됨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호, 2호를 없애고 만약에 굳이 하겠다면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내야지 너무 이렇게 많이……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서를 달고 싶으시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 놓고 ‘다

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철규 위원

2항에도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는데 **산업부장관의 동의를 강제**시켜야 돼요, 동의를 요구받게끔 더 강화.

- 시사점

- 회의록 상 '삼성' 언급이 총 6차례 등장
- 당초 비공개 예외 단서로 국민건강이 거론되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의결된 법안에서는 빠짐
- 삼성 피해자 소송까지의 영향 문제는 이 회의에서 드러나지 않음
- 비공개 예외를 할 경우라도 산업부의 의중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강제함

## □ 산기법 통과 의 원인 정리

○ 법률안의 교묘한 우회적 입법 전략

- 은닉된 독소조항 : 노골적으로 삼성피해자 소송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쓰고 입법화되어 적극적인 감시와 문제제기를 무력화
- 비환노위 법안 : 삼성과 백혈병 관련 법률안은 환노위에서 노동자와 시민단체, 진보언론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았지만 이번 산기법의 경우 비환노위 법안이기에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음

○ 대내외적 정치환경

- 일본의 수출규제를 통해 갈등이 첨예해지던 국내 여건
- IT제조업 관련 국내기술의 육성과 보호에 대해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던 시기임

○ 국회에서의 부족한 정보

-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긴 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에게 막혀 적극적인 반대를 피하지는 못함
- 그 당시 삼성 측이 '국가핵심기술' 논리를 통한 소송전략을 피한다는 정보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공유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됨

○ 진보정당 차원의 상황관리 역부족

- 정의당의 경우 6석에 불과하며 산업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었고 전담 정책위원도 부재
- 참고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총 숫자는 17대 국회 이후 계속 급증하는 상황

○ 상임위 검토보고와 입법조사인력의 문제

-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함
- 검토보고의 논조에 따라 향후 상임위에서의 심사 방향이 결정되기에 매우 비중있는 권한인데,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과거 제기됨
- 검토를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 이하 입법조사관은 대개 사무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계약직도 일부 포함)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두루 살피거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기는 힘든 구조. 또한 상임위원장의 입김도 크게 작용
- 이번 산기법에서의 상임위 검토보고 역시 체계자구 및 일부 단서 조항 문제를 제외하고는 깊이있는 검토의견이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웠음

○ 상임위 소위원회 공개 문제

- 본회의나 상임위의 회의는 동영상과 회의록으로 곧바로 공개되는데 비해, 소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의 첫단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언론인이나 일반국민은 출입 불가
- 또한 회의록이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에 비해 늦게 공개됨
- 2019년 7월 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삼성’이라는 말이 6차례나 등장했는데, 언론의 참석이 허용됐더라면 이른 시일에 문제가 공론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정보의 긴밀한 공유, 국회제도 개선, 진보정당 역할 강화가 필요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심의 강화를 위한 과제

○ 진보정당의 원내 입지 확대 필요

-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 1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소

위 진입이 필수(교섭단체일 경우 의사일정 교섭을 할 수 있어 유리)

- 산업위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상임위에서의 일상적인 검토를 통해 광대훈 의원안 같은 경우 필터링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됨(제안이유 등 통해)
- 법사위 국회의원 배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게이트키퍼 요구됨

○ 국회 상임위 관련 제도의 개혁

- 상임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역할 조정 및 구성 다양화
  - 검토보고 의무제도를 폐지
  - 소관 정책 쟁점을 의원들에게 보고, 위원회 회의나 청문회 일정을 작성, 법안 및 수정안, 위원회 보고서 초안 작성 등 의원 보조 역할만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역할 축소
  -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인 입법조사관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거 전환
  - 채용 시 산업, 노동,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들에게 문호 개방

○ 국회 회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국회 소위원회의 접근성
  -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전환 가능
  - 또한 공개로 진행을 한다 해도 언론인 출입은 불가능
  - 언론접근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 첨예한 논쟁이 있는 노동 관련 소송의 경우, 반대 측 소송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근거법률과 법리적 쟁점에 대해 제 정당과 공유 필요
- 정당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 더욱 유의하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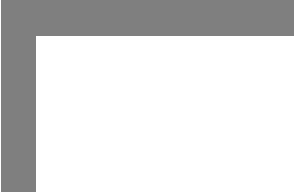
## **토 론 5**

---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부 록





## [부록1]

# 산업기술보호법 상 '산업기술'의 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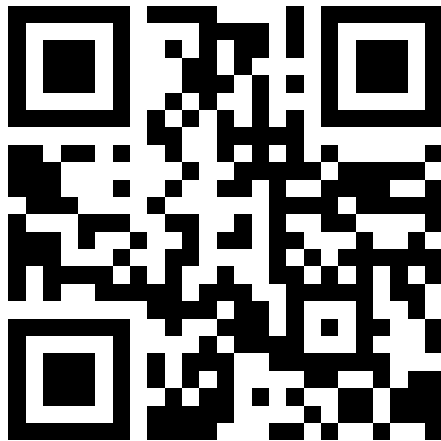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가~자 항목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나'의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임.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의 범위는 자료집에 전체를 신기 어려울 정도로 넓음. 이에 여기에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bitly.kr/s9dnSx0p>)



[부록2]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9. 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1. 개정이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의결('19.6.20)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사항을 알리고,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 및 해외인수·합병의 신청 및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국가핵심기술」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국가핵심기술 법령상 선정기준 명시(안 제3조)

- 국방·치안, 해당 기술분야, 관련산업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토록 선정기준 구체화

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개정(별표)

- 기업·단체 수요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신규지정 기술 7개, 현행 기술 범위의 변경 5개, 현행기술의 해제 2개 등을 반영한 기술목록 개정

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5조)

-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기술의 매입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등 명시

마. 해외인수·합병의 신고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6조)

-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받은 자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바.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승인·신고,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절차 명시(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2, 제18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라. 기 타 :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 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  
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  
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  
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  
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li> <li>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li> <li>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li> <li>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li> <li>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li> </ol>

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신 설>

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 18조의4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신 설>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 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사항]

국가핵심기술 신·구 대비표

1. 신규지정 : 7개 대상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반도체 (1)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전기전자 (2)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 (1)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철강 (2)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기계 (1)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 <sup>3</sup> 이하 등)

2. 변경 : 5개 대상 기술

분야	현행	개정
전기전자 (1)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b>250Wh/kg</b>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b>85%</b> )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b>265Wh/kg</b> 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b>90%</b> )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철도 (2)	<b>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b> 설계 및 제조기술	<b>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b> 설계 및 제조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b>라이더 시스템에 한함</b>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b>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b> )



분야	현행	개정
조선 (1)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직경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정보통신 (1)	LTE/LTE_adv/ <del>WiBro</del> / <del>WiBro_a</del> dv 계측기기 설계기술	LTE/LTE_adv/ <b>5G</b> 계측기기 설계기술

### 3. 해제 : 2개 대상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자동차·철도 (1)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1)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 2018.1.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

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 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

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04호(2018. 1. 15.)는 폐지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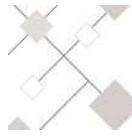
분 야	기술명
반도체 (8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디스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 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전자 (3개)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분 야	기술명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 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 $\mu$ m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7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 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분 야	기술명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9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즘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분 야	기술명
생명공학 (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기계 (7개)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 <sup>3</sup> 이하 등)
로봇 (3개)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발간일 2020. 1. 14

문의 [sharps@hanmail.net](mailto:sharps@hanmail.net) 02-3496-5067